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0. 10. 26. (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조광현)

1. 회부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0. 10. 12.
- 회부일 : 2020. 10. 13. (의안번호 : 20-137)

2. 제출이유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라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재단 설립 목적 및 근거 명시(안 제1조 ~ 제2조)
- 나.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안 제3조)
- 다.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정관변경,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마.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4)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9.10. ~ 9.30.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6) 제1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20.10.6.)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¹⁾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포복지재단²⁾을 설립·운영하고자 조례로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적용범위,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방법, 재단의 정관, 운영재원 및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 등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안 제1조는 마포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포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설립 목적”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으로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설립근거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 나. 안 제3조는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재단의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획연구·조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교류, 협력 등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명시하였고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재 구에서 설립·운영하는 복지재단으로는 “동작복지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 구로희망복지재단, 노원교육복지재단,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강남복지재단, 용산복지재단 등” 10개의 복지재단이 있음.

다. 안 제4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우리구의 출연금³⁾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 안 제5조는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청장과 협의해야 하고,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재단에 공무원의 파견과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종합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구 복지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리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의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입법취지의 타당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다만, 복지재단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재원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3)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출연금(306)”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비”라고 하며, 특히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함.(102, 103 쪽)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 붙임 1. 마포복지재단 설립 개요 1부.
- 2. 비용추계서 1부.
- 3. 마포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비교표 1부.
- 4. 관계법령 1부.

【붙임 1】 설립개요

마 포 복 지 재 단 설 립 개 요

- 명 칭 : 마포복지재단
- 설립형태 : 자치구 출연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공익법인
- 설립주체 : 마포구
- 설립예정일 : 2021년 7월
- 기본재산출연 : 50억원
 - '21년 20억 출연, 이후 매년 10억씩 3년간 출연 예정
 - ※ 시 설립허가 기본재산 최저기준 : 20억원
- 운영재원 : 구 출연금, 이자수입, 후원금, 기타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구출연금) : 연 평균(5년간) 6.1억원
- 조직 및 인력
 - 조 직 : 이사회, 감사, 사무국
 - 임 원 :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포함), 감사 2명
 - 직 원 : 2개팀 7명(사무국장 포함)
- 주요사업 (우선순위)
 -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모금·배분)
 -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 사업
 - 지역복지 역량 강화 및 복지공동체 강화
 - 사회복지시설 운영 · 관리
 - 지역복지 조사·연구 정책개발

【붙임 2】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마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운영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및 재단설립초기비용) 및 세입내역(재단)

나. 비용추계기간 : 2021. 1. ~ 2025. 12.(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이후 계속)	합계	
세 입	이자수입	-	33,200	49,800	66,400	83,000	232,400	
	나눔네트워크협약 지원비	30,000	30,000	30,000	-	-	90,000	
	소계(a)	30,000	63,200	79,800	66,400	83,000	322,400	
세 출	기본재산	2,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5,000,000	
	보통 재산	인건비	174,134	348,888	359,006	369,417	380,131	1,631,576
		운영비	234,714	103,102	104,236	105,382	106,542	653,976
		사업비	65,800	110,800	198,800	198,800	198,800	773,000
소계(b)	2,474,648	1,562,790	1,662,042	1,673,599	685,473	8,058,552		
□ 총 비용(a-b)		2,444,648	1,499,590	1,582,242	1,607,199	602,473	7,736,152	

※ 인건비 상승분(공무원처우개선율2.9%) 및 물가상승율(1.1%) 반영/ 21년 운영비는 초기설립비용 포함

※ 세입은 재단수입으로 기본재산출연금의 이자수입 및 서울공동모금회 협약지원비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등	2,444,648	1,499,590	1,582,242	1,607,199	602,473	7,736,152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 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우정욱 (☎ 3153-8803)

【붙임 3】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비교표

마포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비교

구 분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마포복지재단	마포문화재단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관련 법령	민법, 공익법인법, 지방출자출연법	민법, 공익법인법, 지방출자출연법, 문화예술진흥법	민법, 공익법인법, 지방출자출연법	지방공기업법
설립 형태	재단법인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	주민 복지체감도 제고, 지역 복지수준 증진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 발굴, 육성	주민 생활편의 및 복리증진, 구정 생산성 향상
설립일	2021.07(예정)	2007.09.12	2013.12.20	2004.07.01
조 직	이사장, 이사회, 2팀	이사장, 이사회, 2본부 8팀	이사장, 이사회, 사무국	이사장, 이사회, 1본부 7팀
인 력	정원 7명 (사무국장 1명, 직원 6명)	정원 70명 현원 68명 (공무직·현업직 22명 별도)	정원 3명 현원 3명 (사무국장 1명, 파견공무원 1명 포함)	정원 270명 현원 244명
기 본 재 산 및 자 본	기본재산 출연예정 50억원	기본재산 1,000만원	기본재산 120억원	자본금 8억원
운 영 재 원	구 출연금, 후원금 등	구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후원금 등	기금운영 수입금, 후원금, 기타수입금 등	공단경상전출금, 대행사업비 등
주 요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 민·관·주민협력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 주민참여 확대 및복지 공동체 의식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포아트센터 운영 공연, 전시, 축제 사업 주민 문화활동 지원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관리 문화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인재발굴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물시장 운영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 공영주차장 운영 공공시설물(구청사, 공공체육 시설물 등) 관리

【붙임 4】 관계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재산)

-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는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